

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18. 7. 4.>

소화설비 등 시설기준(제10조제7항 관련)

예선의 마력 소화설비 등		2천마력 미만	2천마력 이상 3천마력 미만	3천마력 이상
펌프	능력(m³/h)	100	110	120
	Head(m)	60 ~ 80	60 ~ 80	60 ~ 80
소화총	엔진마력	45	50	55
	기(수)	2	2	2
화학소화재탱크(m³)		3 ~ 7	3 ~ 7	3 ~ 7

* 비고

1. 예선업자별로 보유한 예선의 2분의 1이상의 예선에 위 표에 따른 소화 설비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2.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(LPG), 액화천연가스(LNG)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선박에 대한 예선업무를 수행하는 예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의 화재 소화에 적합한 소화 설비 등 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.